

‘도난 방지용 CCTV’ 봉지로 가린 노조...대법이 손 들어준 까닭



회사가 노사 합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출퇴근 모습이나 근로현장을 찍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장 내 CCTV를 검정 비닐봉지로 덮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간부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CTV 카메라〉

타타대우상용차 사측은 2013~2015년 전북 군산 공장에서 도난 사건과 화재 사고가 일어나자 2015년 10월 CCTV 51대를 설치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2015년 11월~2016년 1월 네 차례에 걸쳐 41일간 이들 CCTV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자,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에서 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CCTV 설치하는 위법하므로 CCTV를 가린 건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CCTV는 시설관리 목적인 데다, 대부분 공장 외곽에 설치돼 직원 감시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1·2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CCTV의 경우 시설물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 외곽 울타리에 설치된 32대와 달리, 공장 부지 내부와 출입구에 설치된 19대는 회전과 줌(zoom) 기능이 있어 직원들이 언제 출퇴근



〈대법원 전경〉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관리 목적은 OK, 직원 촬영은 위법

대법원은 이에 따라 노조가 해당 CCTV를 가리며 항의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출퇴근 장면 등을 찍는 CCTV 설치에 근로자참여협상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노조 간부 A씨 등은 “작업 현장을 찍는 CCTV 16대는 야간에만 작동하자.”고 제안했으나, 회사 측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노조가 CCTV 51대를 모두 가린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회사는 시설물 보안, 화재 감시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고,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32대의 카메라를 포함해 모든 CCTV의 설치·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